

폭발물(포탄, 수류탄, 폭발물 추정물체 등) 발견시 접촉·이동금지 신고 홍보

최근 농경·어업 활동 등 민가 지역에서 불발탄이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, 발견 후 임의 접촉 또는 외압을 가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폭발물 발견시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, 해당 탄약을 수거·반출·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 드립니다.

사 고 사 례

- ▶ '12. 4. 9. ○○지역 고물상에서 사격장에서 수집한 40mm 고폭탄 불발탄두를 구리와 몸통분리 작업을 하다가 불발탄이 폭발하여 1명 사망, 3명 중·경상
- ▶ '14. 3. 8. ○○지역 민간인이 무단으로 사격장 경고간판 및 철조망 등을 훼손하고 사격장 내로진입, 사격 잔유물 회수 중 90mm 무반동총 탄약(추정)이 폭발, 1명 부상

불발탄 폭발 시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!

- ※ 불발탄은 외압을 가하면 터질 수 있습니다.
- ※ 탄피, 불발탄을 임의로 수거 / 취득 시 군용물 절도에 해당됩니다.



☞ 불법 수거 시 군형법 제75조에 의거 5년 이상의 징역형



사격장 및 훈련장은 무단 출입하면 안됩니다!

※ 군부대 훈련인원 및 관리자 외 출입 일체 금지

☞ 무단 출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



타인이 수거한 탄피 및 불발탄 매매하지 맙시다!

※ 타인이 불법 수거한 탄피 및 불발탄은 **장물!!**

⇒ 이를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**장물취득죄로 처벌**

☞ 장물취득 시 형법 제 263조에 의거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형

☎ 신고전화 : 1338(군부대) / 112(지역경찰서)

제 2003부 대